

의약품 등 검사

- ❖ 유통 의약품 정기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의약품의 관내 유통 차단
- ❖ 국민 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시민 보건 및 삶의 질 향상 도모

○ 관계법규

- 약사법 제69조(보고와 검사 등)
-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(의약품 등 품질의 관리) 및 제86조(수거 등)

○ 검사내용 : 유통 의료제품 품질감시

○ 검사대상 : 유통 의약품 등

○ 검사기간 : 2023. 10. 1. ~ 10. 31.

○ 검사건수 : 유통 의약품 45건 검사 진행

○ 검사항목 : 성상, 확인, 제제균일성시험, 용출시험, 함량시험

○ 검사방법 : 대한민국약전, 미국약전, 유럽약전 및 자사기준

구 분	검사건수	부적합	부적합 항목	비고
합계	-	-	-	-
유통 의약품 검사(관원)	-	-	-	45건 검사진행중

○ 향후계획 : 연간 160건 검사(의뢰기관: 시 보건의료정책과)